「한국지방행정학보」 제7권 제2호(2010. 12): 79-100

다문화 사회의 조기정착을 위한 사회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ocial Integration for Early Settlement of Multi-Cultural Families

박 상 규 (한서대학교 내포지역발전연구소 연구원)

Abstract

Sang-Gyoo Park

This study suggests a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through supportive policies designed to improve the female immigrants' life quality and integration into a local community.

Specially, continuous education and enlightenment may be necessary for families and neighbors to eliminate prejudices against female immigrants. And a social integration programs may also be necessary to meet the needs of a married female immigrants. Economic supports could be available to most female immigrants who are in poor economic conditions. In addition,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with accessible procedures to obtain citizenship and find a job. Furthermore, it may be urgent to introduce so-call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re are many functions to be asked to local self-governments. They can provide job training for female immigrants to display their potential abilities, offer jobs, and operate education or consultation programs for families to solve problems and conflicts.

It may also be necessary to introduce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may be in solely charge of multi-cultural families-related affairs. Finally, a system of consolidating a local self-government, NGOs, and residents should be developed with the purpose of creating socal environments that those female immigrants are truly understood and accepted as a neighbor and a citizen in Korea.

주제어: 다문화가족, 국제결혼, 결혼이주여성, 사회통합

Key Words: multi-cultural families, international marriage, married female immigrants, social integration

Ⅰ.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인구이동이 상시적,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외국인 체류가 전체인구의 100만을 넘어설 정도로 한국사회는 인구 구성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국제결혼의 증가추세는 특히 두드러진다.

국제결혼 증가의 국내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부족한 성비 불균형을 들 수 있고, 여성의 고학력 등으로 유학, 취업,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경제력이 좋아진 여성들이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면서 독신의 증가로 경제력이 낮은 도시 하위계층이나 농촌총각과의 결혼을 꺼리는 사회풍조로 인해 결혼상대자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고 외국여성을 결혼대상자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제결혼이 증가하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성비 불균형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1990년대 여아 100명당 남아 116.6명의 성비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에는 남성 4명당 1명이 결혼상대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은 한국사회의 성비불균형에 따른 국제결혼의 여성화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 특성상 남성에 비해 여성의 도시이주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에 기인한다.

현재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 4명중 1명은 국제결혼으로, 도시에 비하여 단일민족에 대한 믿음과 가부장적인 가족제도를 더 고수하고 있는 농촌사회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겪게 되는 언어,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한 차별대우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겪게 되는 문제가 이제는 간과할 수 없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2006년에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에 이어 2008년 3월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2008년 9월21일에 시행되었다. 그러나 아직 출발 단계로서 앞으로의 다문화정책은 지나치게 경제적인 이익이나 효과에만 치중하는 것을 지양하고 이주여성들의 잠재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양성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그 배우자와 시부모에 대한 한국 문화이해교육과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문화적응교육,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적응지원,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제도적 지원, 문화이해 부족에서 오는 가족갈등해소를 위한 가족상담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정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조한숙, 2009).

매년 증가하는 국제결혼의 비율만큼 이제는 우리사회에서 단일민족국가라는 고정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칭하던 한 민족, 단일 민족 국가

등의 개념과, '민족=국민'이라는 관점도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우리사회의 현상을 직시하고 다양한 문화를 내재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진정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이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증가배경, 여성결혼이민자 현황 및 관련문제와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정책현황을 살펴본 후 그들이 처해 있는 현실적 어려움과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함과 아울러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생활 조기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보완방법 및 정책지원방안을 제시해 건강한 다문화가정의 형성에 기여코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Ⅱ. 이론적 배경

1. 다문화주의의 개념

다문화주의라는 개념의 본격적인 등장은 1970년대 이후 캐나다와 호주에서였는데 다민족으로 구성된 캐나다는 퀘벡 주와 서부 주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화 간 충돌을 해소하고 국민국가의 통합을 위해 '2개 국어·다문화주의'를 표방하였다. 호주에서의 다문화주의는 다민족주의의 의미를 담고 있고, 국가통합 또는 국민통합 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전에 소수민족문화와 주류문화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1] '동화주의'와 '용광로주의'가 있었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 백인 문화를 중심으로 소수 민족문화를 동화 혹은 융합시키려는 불평등한 문화정책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진정한 다문화 주의는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최현미, 2008).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의 사전적 정의는 여성문화, 소수파문화, 非서양문화 등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주변문화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자는 입장 또는 여러 유형의 이질적인 문화를 세계주의 또는 다원주의 입장에서 유용하게 수용하자는 입장을 지칭하며, 현상적으로는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다원화된 인구학적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윤인진(2008)은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1) '동화주의'는 소수 민족들이 자신들의 문화를 버리고 융합되어 백인문화에 완전히 흡수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기초하였고, '용광로 주의'는 다양한 문화들이 융합되어 새롭고 독특한 미국의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론이었다.

공존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하며, Tropper(1992; 장미혜, 2008 재인용)는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고 인종, 민족, 국적에 따른 차별과 배제 없이 모든 개인이 평등하게 기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또한, 정상중(1995)은 다문화주의란 체계적인 이론이나 조직적인 운동이라기보다는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문화의 억압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한 다양한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인식, 혹은 그 차이를 열린 마음으로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 배양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행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몇 개의 인접한 소수집단의 단위문화가 주류사회의 단위문화를 배경으로 점점이 박혀있는 '모자이크(mosaic)'가 아니라,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상호 공존하면서 각자의 색깔과 냄새 그리고 고유의 개별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서로 조화를 통한 통합성을 이루어 내는 이른바 '샐러드 그릇(salad bowl)'을 의미한다고도 정의한다(강휘원, 2006). 이것은 다양한 문화 상호간의 이해와 존중, 대화와 신뢰를 바탕으로 전체를 관통하는 다문화적 정체성을 수립하는 것으로 다문화적 정체성이라 함은 강제와 배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자 공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원적인 국민성을 의미한다.

다문화주의 개념의 등장으로 다양한 인종의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가들에서는 국민들을 어떻게 하나의 '국민'으로 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는 곧 국가 이데올로기(ideology)로서의 다문화주의의 채택을 의미하며,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란 폭넓고 다양한 가치들을 반영하는 이념이기 때문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한 사회 내 다양한 인종이나 민족 집단들의 문화를 단일한 문화로 동화시키지 않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공존 하게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념체계와 그것을 실현 하고자 하는 정부정책과 프로그램을 가리킨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

이제 한국사회는 강력한 국민적 정체성의 특징 이였던 단일 문화 사회로부터 다문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으므로 오랜 동안 '민족=국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사회를 규정짓던 지난 시대의 관념을 하루빨리 재구성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듯 단일민족의 국가가 아닌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지닌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사회로 변모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원들의 정체성의 다양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세계 각국을 불문하고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 사회의 정책적 운영 방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책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첫째, 동화주의적 접근이다. 동화주의 사회에서 소수민족집단이나 이민자들은 다수집

단의 사회 속에 융해되며, 문화적 적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 소수민족 집단이 다수 집단의 제도와 문화에 동화되는 것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거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민자와 소수민족집단은 그 특징과 문화적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 보존하는데 그친다. 이러한 문화와 정체성의 전이를 가능하게 하고 가속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한다. 국적과 시민권 정책에 있어서 국가는 국적이나 시민권을 쉽게 부여한다. 즉, 이민을 쉽게 받아들이고 각종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도 개방적인 편이며 다른 모든 영역에서 사회정책은 원칙적으로 시민의 문화적・민족적・인종적인 기원을 고려치 않고 시행되고, 시민 각자가 타인과 구별되는 특성과 관련하여 제시 할 수 있는 주장들은 고려되지 않는다. 이 정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 이다.

둘째, 다원주의적 접근이다. 이민으로 생겨난 소수 민족 집단들의 문화적 정체성과 특수성이 공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문화주의의 영향을 받은 정책의 일환으로 문화와 정체성의 다양성이 장려된다. 다문화주의는 문화적 다수집단이 소수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정치이다(Taylor, 1992; 김소연, 2007 재인용). 이러한 사회에서는 몇몇 소수집단이 당하고 직면하고 있는 차별정책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혹은 이미 사회로부터 배제됨으로써 발생한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해서 여러 영역(고용, 교육, 주거 등)에서 특혜정책이 시행 될 수 있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미국, 스웨덴이 이에 속한다.

셋째, 차별적 포섭・배제 접근이다. 어떤 소수집단은 그 존재가 인정되고 또 어떤 집단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특히 국적과 민권정책은 훨씬 더 제한적이다. 국적 부여의 기본 원칙은 '속인주의' 혹은 혈통에 의한 권리를 인정하고 귀화는 가능하기는 하지만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국가에 재량권이 주어져 그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많은 비용이 든다. 국적의 권리는 외국인들을 사회 내에 포섭하기 보다는 배제하는 수단이 되며 일본, 독일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실제 각 나라의 예를 보면 그 지배적인 모델이 무엇이든지 간에 때로는 동화주의에 의한 정책을 때로는 다원주의적 접근에 의거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적 상황에 의해 특수한 차별적 접근에 근거한 정책들을 시행하기도 한다(김소연, 2007 재인용).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통일과 동구권 붕괴로 인한 이주민의 증가와 IT분야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이민의 필요성 같은 사회, 경제적 변화에 따라 차별적 포섭・배제 접근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일본은 공식적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 중의 하나로 지금까지 이민자들에 대해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2005년 '다문화 공생추진 플랜'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설정하면서 정책의 일대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 플랜에서는 외국인을 단순한 지

원의 대상에서 탈피하여 공생관계로 설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거주자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완비하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다른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통해 개방적인 태도가 확립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김이선 외, 2006).

우리나라의 이민자나 소수민족에 대한 다문화정책은 위의 세 가지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차별 포섭·배제적 접근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혈통에 의한 국적부여와 귀화를 하기까지엔 그 절차가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이 따르며 대부분의 이주민을 사회의 일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고, 순수혈통주의, 단일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민족들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었으나 최근 급격한 인구학적 변화로 인해 이제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문화적 단일성만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일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다민족·다문화사회가 되어가는 우리사회의 현실에 맞는 다문화정책으로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김소연, 2007).

Ⅲ.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지원정책

1.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현황

한국에서 국제결혼의 증가는 1990년대 말부터 국제결혼을 주관하는 전문회사들이 생겨나면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년 국제결혼은 총 36,204건으로 전체 결혼 327,715건의 11%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은 총 28,163건으로 국제결혼 중 78%, 전체결혼대비 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현상이다. 그 당시엔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소수에 불과 했었고, 한국인 여성과 주한외국 군인들과의 결혼과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국제결혼이 대부분 이였었다. 1992년 중국과의 수교이후 한국계 중국인과의 왕래가 수월해 지면서 '조선족'이라고 지칭되는 연변사람들은 동일민족이라는 점과 언어 소통이 어렵지 않다는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어 아내로서 선호된 측면이 있다. 그러던 추세가 1990년 후반 들어 IMF로 인한 경제사정의 악화, 조선족여성들의 위장결혼, 사기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비판이 높아지고 남편과 가족들의 피해사실들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국제결혼의 증가폭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냈다(한국여성개발원, 2006; 조한숙, 2009).

<표 1> 연도별 국제결혼 추이(단위: 건, %)

구 분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총혼인건수	399,312	332,090	304,877	308,598	330,634	327,715
국제결혼	4,710	11,605	15,202	34,640	38,759	36,204
총 혼인건수 대비 구성비	1.2	3.5	5.0	11.2	11.7	11.0
한국남편 +외국아내	619	6,945	10,698	25,105	29,665	28,163
한국아내 +외국남편	4,091	4,660	4,504	9,535	9,094	8,041

자료: 통계청(2009).『2009년도 인구동태(혼인)』로부터 재구성.

이러한 과정에서 1998년 개정법이 시행되어 국적취득이 어려워지면서 국제결혼 경로의 발전과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들의 국적별 분포를 <표 2>에서 살펴보면 , 중국, 미국, 태국은 줄어드는 반면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리핀, 몽골, 중앙아시아 등으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들이 순종적이며, 외모가 우리와 비슷한 모습으로 거부감이 적고 결혼정보업체들이 자신들의 사업대상국으로 끌어 들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 중국이나 태국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줄어든 반면, 베트남, 몽골,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 국제결혼중개과정에서 그 절차가 좀 더 수월한 나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그 쪽 나라 여성들과의 국제결혼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 한국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아내의 국적별 현황(단위: 건, %)

구 분	1990	2000	2002	2004	2006	2008	구성비	전년 대비 증감률
계	619	6,945	10,698	25,105	29,665	28,163	100	-1.5
중 국	88	3,566	7,023	18,489	14,566	13,203	46.9	-8.8
베트남	*	77	474	2,461	10,128	8,282	29.4	25.3
필리핀	*	1,175	838	947	1,117	1,857	6.6	24.0
일 본	175	819	690	809	1,045	1,162	4.1	-3.6
캄보디아	*	*	*	72	394	659	2.3	-63.5
태 국	*	240	327	324	271	633	2.2	20.8
몽 골	*	64	194	504	594	521	1.8	-30.1
우즈베키스탄	*	43	183	247	314	492	1.7	40.2
기 타	88	962	969	1,252	1,236	1,354	4.8	-0.4

* 기타에 포함.

자료: 통계청(2009).『2008년도 인구동태(혼인)』로부터 재구성.

특히 전년 대비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우즈베키스탄 여성과의 결혼은 40%라는 높은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베트남 25%, 필리핀은 24%, 태국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계속 증가하던 몽골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 아내의 폭력이 심하다는 자국의 언론보도에 의해 국제결혼의 조건을 까다롭게 하면서 감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 증가를 한다면 앞으로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하여 베트남, 필리핀 여성과 한국남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 시장에서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농림어업 종사자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의 국적별 분포를 <표 3>에서 살펴보면,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 증가는 농어촌 남성이 주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농어촌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아내의 국적별 현황(단위: 건)

구 분	2007					2008				
국 적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기타	계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기타
건 수	3,171	1,353	842	484	492	2,472	1,290	673	207	302

자료: 통계청(20091).『2008년도 인구동태(혼인)』로부터 재구성.

2008년 농림어업종사자의 결혼 현황을 보면 총 결혼건수 중 2%에 해당하는 6,458명이 농림어업종사자이나 이중 38.3%에 해당하는 2,472명이 외국여자와 국제결혼을 하였으며 이중에서도 읍면거주 남성의 경우는 결혼건수 4,959명 중 41%에 해당하는 2,038명이 외국여성과 결혼하고 있어 결국 읍면단위 농림어업종사 결혼남성의 절반가량이 국제결혼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통계청, 2009).

<표 4>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결혼 현황(단위: 건, %)

		혼인건수 (A)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의 혼인		농림어업종사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	
			건수(B)	구성비(B/A)	건수(C)	구성비(C/A)	건수(D)	구성비(D/C)
2007년	계*	343,559	28,580	8.3	7,667	2.2	3,171	41.4
	동부	274,592	20,145	7.3	1,718	0.6	522	30.4
	읍・면부	59,397	8,016	13.5	5,948	10.0	2,649	44.5
2008년	계*	327,715	28,163	8.6	6,458	2.0	2,472	38.3
	동부	262,357	19,893	7.6	1,499	0.6	434	29.0
	읍・면부	57,035	7,853	13.8	4,959	8.7	2,038	41.1

* 국외 및 미상 포함자료.

자료: 통계청(2009).『2008년도 인구동태(혼인)』로부터 재구성.

또한 2008년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는 <표 5>에서 처럼 11.8세로 전년보다 0.3세 증가하여, 한국인 부부의 혼인 연령차(2.3세)보다 9.5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국제결혼 부부의 평균 혼인 연령차(단위: 세)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한국 남자+ 한국 여자	6.9	7.5	7.9	8.3	8.4	9.1	11.6	11.5	11.8
한국 여자+ 외국 남자	6.6	6.5	5.2	4.0	3.1	2.7	4.1	4.3	4.1
한국 여자+ 한국 남자	2.7	2.6	2.6	2.6	2.6	2.5	2.4	2.4	2.3

자료: 통계청(2009).『2008년도 인구동태(혼인)』로부터 재구성.

한편 국제결혼부부의 이혼도 증가하고 있는데 <표 6>에서 살펴보면 2007년 한국인과 외국인부부의 이혼은 총 8,828건으로 전년대비 40.6% 증가하였다.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와의 이혼은 2007년 총 이혼건수의 7.1%를 차지하였고 2002년 이후 이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표 6>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현황(단위: 건,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이혼건수	145,324	167,096	139,365	128,468	125,032	124,590
외국인과의 총 이혼건수	1,866	2,164	3,400	4,278	6,280	8,828
총 이혼 대비 구성비	1.3	1.3	2.4	3.3	5.0	7.1
증 감	-	298	1,236	878	2,002	2,548
증 감 률	-	16.0	57.1	25.8	46.8	40.6
한국인 남편 *외국인 아내	401	583	1,611	2,444	4,010	5,794
증 감 률	-	45.4	176.3	51.7	64.1	44,5
한국인 아내*외국인 남편	1,465	1,581	1,789	1,834	2,270	3,034
증 감 률	-	7.9	13.2	2.5	23.8	33.7

자료: 통계청(2008),『2007 이혼통계』 결과 재구성.

외국인 배우자와의 총 이혼 중 동거기간이 4년 미만인 이혼비율이 전체 80%를 차지하고, 특히 한국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경우 90.2%를 나타내고 있어, 한국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부부가 이혼할 경우 거의 4년 미만의 결혼초기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상당수가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국남성과 외국여성과의 국제결혼부부의 경우 문화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 한국의 가족 중심적, 가부장적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등으로 인하여 부부간의 갈등이나 가족 구성원간의 갈등이 증가하면서 쉽게 이혼을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부부와 그 가족들에 대한 부부 상호간의 이해 및 가족의 다문화적 의식함양 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특히 예비 남편 및 결혼초기 남편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현실은 혼인의 진정성을 결여한 상업적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수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업적 중개방식을 통한 국제결혼부부가 상당수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많은 갈등과 '결혼 초기에 깨어질' 가능성을 안고서 출발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정부는 우선적으로 여성의 상품화를 수반하는 상업적 국제결혼을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나 지역사회에서는 국제결혼부부의 상호이해를 높이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다문화가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0년대 후반부터 국제결혼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이후에는 그 증가 추이가 가파르게 진행되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은 결혼 형태의 하나로 정착되어 가고 있어 다문화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관심과 관용으로 포용해 주어야 할 것이다.

2.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정책 현황

1) 정부의 지원정책 현황

2005년 하반기부터 범 정부차원에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2006년 4월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및 혼혈인·이주자 사회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가운데에서 여성결혼이주자와 관련하여 인권 침해적인 결혼과정과 국적문제, 결혼 후 가족갈등 문제, 특히 빈곤과 언어소통, 자녀양육, 가족폭력문제, 체류자격 및 복지 수혜자격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다.

우선 인권 침해적인 결혼방지를 위해서 국제결혼중개업에 대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가족갈등으로 인한 체류자격 불안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류자격인정제도 개선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이주여성의 경제적 빈곤문제 해결을 위

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취업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고, 정책담당자와 서비스 해당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주여성들이 한국사회에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한국문화이해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계획도 세워져 있다(홍소연, 2007).

2006년 12개 관련부처가 총 87개 과제, 27개 소과제를 분담 시행하여 여성가족부가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총괄을 시작으로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21개)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립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편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결혼이민자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어 다문화가족과가 신설되었다. 다문화가족과 에서 2008년 5월부터 결혼이민자의 조기정착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유지,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및 글로벌 인재육성, 국민의 다문화사회 이해증진을 위해 민·관 협력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으로 '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정책으로는 다문화가족정책관련 법령의 제정 및 시행으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한 「결혼중개업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2008년 6월)과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정보제공, 사회적응교육 등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체계화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시행(2008년 9월)되었으며, 보건복지가족정책 전체를 포괄하는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을 수립(2008년 10월)하였고,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중개업의 사회적 책임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신규 결혼중개업자를 위한 등록 전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 교육과정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국제결혼 당사자 간에 혼인경력, 건강, 직업, 폭력전과 신상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것을 의무규정으로 신설하고자 추진하고 있으며(김태원 의원 발의 중), 결혼이민자의 주요 출신국 현지에서 사전정보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집합·방문·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수준별로 세분화된 한국어 교육을 실실하고 있으며 문화관광부가 공동추진으로 고급과정 확대운영 및 수준별·상황별로 다양한 교재를 보급함과 아울러 센터에 접근이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대로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한국어 및 아동양육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초기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를 활용하여 통·번역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문화가족자녀의 언어·학습능력 지원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보육시설 파견서비스가 실시되고 있고, 언어별 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이중 언어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과 가정 내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방문교육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사회 자립을 위한 영농기술교육 교육기관 및 과정확대를 통해 역량강화교육을 하여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여성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활동지원 강화를 위해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대상별, 기능별로 활성화하고 다문화 모니터링 단을 활용하여 생활불편 해소 창구역할을 하며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족 지원 기구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 우리나라 다문화정책의 한계

우리나라에서 국제결혼의 급증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을 증대시켰다. 단일민족과 단일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편견을 혼란스럽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2006년 미국에서 미식축구선수로 성공한 혼혈2세 하인즈 워드는 일약 유명인사가 되었고, 우리청소년들도 그를 한국사람 으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사회에 다인종·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교육의 필요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2007년 여름 발생한 여수 외국인 보호소화재 참사는 사건에 대한 외면은 물론 우리사회가 여전히 인종적·문화적 편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나치게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학습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중앙부처와 자치단체의 다문화정책, 좀 더 정확히 여성결혼이민자정책을 보면 대부분 한국어 교육과 정체성 확립과 같은 우리나라 문화로의 빠른 동화를 위한 정책들이다. 물론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조기습득은 학교교육 및 사회생활에서 소외감과 이질감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문화정책의 핵심이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공존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둘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내용이 대부분 이주여성의 적응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회통합에만 맞추어져 있으며, 오히려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소수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마련은 미흡한 편이다. 즉, 다문화의 공존을 위한 정책보다는 사회적 소수를 보호해 주기 위한 다수의 이해를 넓히는 방향에서 논의 된다는 점에서 오히려 온정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셋째, 순혈주의 전통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으로 소수자 문화에 대한 이해의 길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주의를 주창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면서도 소수자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언급은 미흡하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초·중고의 교과서는 여전히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으로 전통을 이어오고 있으며..."라는 단일민족신화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지역특성에 따른 다문화구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따라 선진국

들의 다문화융화정책에 대한 이해 부족이 혼재해 있다(김경아, 2008). 즉,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다문화사회의 구성 특성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이해 없이는 지역별로 적절한 정책수립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적 다문화 구성요인들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적합한 정책제시가 이루어질 때 조금 더 현실적인 다문화정책이 수립 될 수 있을 것이다.

Ⅳ.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다문화가정의 문제점

1) 언어소통 및 문화적 문제

어느 사회든지 타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 문화적 차이와 언어문제에서 오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배우자와 가족 구성원 간에 겪는 갈등문제는 이주여성 당사자의 고통은 물론 가정해체의 위기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사소통 수단인 언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맺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언어는 차별과 폭력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차별과 폭력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언어문제는 부부관계, 친구관계,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요인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염(2004b)은 이주여성노동자들이 한국생활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의사소통이 31.9%, 문화적 갈등이 23.9%로 의사소통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였다(김민영, 2007).

2) 경제적인 문제

경제문제로 국제결혼을 선택하는 한국 남성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국제결혼 목적을 본국에 있는 가족의 생계와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데 두고 선택을 했으나 정작 한국에 와보니 남편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결혼중개업자들의 허위・과장된 사전정보에 의해 정확한 현실을 말해주지 않고 농업에 종사하면 농장경영주, 주유소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도 큰 회사의 책임자, 자동차 수리업체의 기능직은 공장장 등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다(조한숙, 2009). 김선아(2007)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여성결혼이민자 가구의 경우 절대 빈곤율은 절반을 훨씬 넘는 57.5%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것은 모의 국적을 떠나 한국사회

에서 삶을 살아가는 외국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엄마로 둔 한국국적의 아동들은 절대 다수가 기본적인 최저생활조차 유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다.

3) 가정생활의 문제 및 자녀들의 정체성 혼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나이가 대부분 20대 초반으로 어리고 당연히 임신과 출산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고 의사소통의 부재로 정보도 얻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정생활에도 문제가 나타난다(김민영, 2007). 한국염(2004a)에 따르면 출산 이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만성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육아문제 또한 힘든 문제로 대두되며 육아법을 몰라 아기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정보부족으로 초기에 진료를 받지 못해 병을 키우는 경우도 발생하며 육아 등으로 한국어를 배울 기회는 더 적어지고 어눌한 말이 자녀의 언어 발달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2세들은 친척과 가족들로부터 냉대 받고, 외국인으로 치부되면서 한 민족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한국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따돌림을 당하면서 심리적 고립감, 정서적 소외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러한 고립감과 소외감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낮은 자존감과 상실감은 우울증과 자신감 결여 등 큰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4) 인권침해 문제

여성단체와 이주여성단체의 통계에 의하면 성폭력에 대해서 66.7%가 보상을 받지 못했으며, 70.6%는 성폭력 가해자가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해여성의 72.2%는 성폭력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상담소나 피난처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33.3%가 성폭력예방교육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였다.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 남편과 살고 있으나 거주비자로 체류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외국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복지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 결혼사유가 취하되면 법적으로 불법체류가 신세로 전락하는 등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일 년 마다 비자를 갱신하도록 되어 있는데 비자 연장 시 신원보증을 남편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비자연장을 무기로 삼아 이주여성을 억압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후 취득 할 수 있는 국적도 남편이 동행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적법 역시 남편에게는 무기가 되고 있다. 어떤 경우는 아이를 낳아도 국적 신청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다.

5) 정보소외로 인한 사회 관계망 형성과 사회참여 기회의 어려움

단일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완전한 언어 습득 전 신문, 라디오, TV등 국내 뉴스

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매체로부터 소외되거나 지역사회 주민으로서도 언어적인 장벽으로 관계망 확장이 어려워 여성폭력 발생 시나 문제 예방을 위한 접근성 자체가 떨어지고, 사회시스템의 이해부족으로 변호사 선임, 사법적인 절차의 선택, 혹은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것의 어려움과 공권력의 도움을 받을 기회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된다.

2. 다문화 가정의 사회통합을 위한 개선 방안

1) 관련 법규와 다문화 가정 지원 제도의 개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은 일방적인 동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출신국적을 유지하며 살아가기도, 한국국적을 취득하기도 요원한 상태에서 불안하게 생활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상당수 이므로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주권 비자 취득요건에 결혼이민자 특례 조항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영주권 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자격이 한국에서 머무를 수 있는 권리만이 아닌 그들이 진정한 주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한국인과 결혼을 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F-2)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이혼을 신청하게 될 경우 거주 비자가 방문동거(F-1)비자로 전환되는데 방문동거 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이혼소송 중에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법적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취업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남편의 보증이 없으면 곧바로 불법체류 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현행제도는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여성결혼이민자가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에 적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인 남편과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의 단위를 가구로 지정하여 실질적인 생계인원과 지급되는 생계비가 일치하도록, 여성결혼이민자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정부의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지원은 농촌에서 더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제도는 우선 지역단위의 정부기관에 의해 해당 지역 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은, 여성결혼이민자가 초기 한국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홍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국어 서비스(국제결혼여성의 상담동시 통역서비스)긴급전화서비스(1577-1366)의 서비스 확충망이 더 확대 되어 실질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앞의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다문화기본법제정』등 체계적인 지원근거의 마련

을 들 수 있다. 다문화정책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다각도로 지원시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늘어나는 다문화 현상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 출산 고령화 문제를 푸는 대안이 될 수 있음 을 인식하고 다문화기본법 제정 등 다문화정책을 총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지원책의 전달체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하다[2].

2) 여성 결혼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체계적 모델 개발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교육의 일관된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언어문제이고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체계의 일관성 부족으로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 현실에 맞는 교재개발은 물론 한국어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다문화를 이해하면서 체계적으로 교육 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이 필수이며, 이들에 대한 보수교육도 꾸준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이해교육에 치중된 감이 있으나, 이들의 보다 원활한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는 한국에서의 일상생활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알려 주는 보다 넓고 포괄적인 맥락의 한국적응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한다.

예컨대 주거・교통・사회・보건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은행거래・쇼핑・가계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는 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법률이나 의료, 체류자격 등의 문제에 대해 다(多)언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多)언어 리플릿 등을 비치 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정보소외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살려 이들의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주어 하며 사회적 지지망 형성을 통해 쌍방향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직업능력교육과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

한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한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 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한국에 거주 기간이 긴 여성결혼이민자 일수록 취업을 희망하는데 이는 경제력을 지니는 것이 한국생활 적응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

2) 2009. 6. 29 동아일보, 한나라당 진영의원 인터뷰 인용 (진영의위원은 2008. 12월 발족한 한국다문화센터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음)

따라서 이들에게 전문적인 훈련과 역량강화 통해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 제공 되어야 하며, 고학력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역량 즉,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어능력을 감안하여 외국어 교육 강사. 방과 후 학교 교사 통역요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경우 경제적인 안정감과 자녀와 가족들로부터의 인정이 자존감의 향상으로 사회적 안정감 형성의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더 이상 주변인이 아닌 주체가 되어 지역을 이끌어 갈 주인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끌어올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4) 배우자와 가족 간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여성결혼이민자와 그들의 자녀가 한국사회에서 자긍심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들 여성의 고국 문화에 대해 한국사회가 지금보다 더 심도 있게 이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 현재는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대상을 한국인과 결혼한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주로 실행되고 있는데 한 국가의 문화에 대한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를 홍보하는 특별기간을 지정하거나 축제를 벌이고 가족 간 비교 문화적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각종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교적 생소한 아내의 출신국의 문화와 풍물을 한국인 남편과 가족들에게 소개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여 가족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해소가 작아질 때 배우자 및 가족들의 다문화이해의 효과와 만족도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배우자와 가족들의 이해가 전제될 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착 기간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5) 다문화 전담 행정 기구 및 인력 배치와 지원예산의 확대

보통 지자체의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담당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업무를 전담과 또는 담당계를 신설하여 책임감 있고, 전문성에 입각하여 일관된 다문화가정 지원업무가 추진될 때 업무의 효과성 및 전달력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전문인력의 배치와 다문화 지원 사업 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그동안의 선심성, 또는 전시행정의 일회성 행사의 중복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다문화가정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의 제공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현재 각 자치단체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예산은 대부분 교육과 관련된 경비나 일회성행사 경비 등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바 다문화가정의 가정생활지원 등 내실 있는 예산으로의 대폭개편 확대가 요구

된다. 즉,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녀양육비, 학비보조금, 직업훈련비, 특별생계비, 의료비 등 전향적 예산지원을 시행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6) 다문화 2세들을 위한 교육기반의 확충

우리나라의 현실은 자녀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문화 2세들은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가 서툴고 우리문화와 풍습에 익숙하지 못하므로 교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우선 학업 성취도가 낮은 자녀들을 위해 보충교육이나 방과 후 수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지역의 대학생들을 활용한 멘토링[3]을 활용하거나 일반학교에서 통합된 교육을 받을 경우 이들을 위한 교재와 교육과정,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어교육을 위한 방문지도학습과 아울러 다문화가정자녀를 위한 전문적인 보육시설 및 다문화아동전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활성화도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여겨지며, 다문화교육이 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사들의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연수가 반드시 필요하며 초·중교 교과서 내용 중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부문을 다문화 인권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다문화 2세들의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7) 자치단체·NGO·주민과의 연계 시스템 구축

지방자치단체와 NGO, 그리고 주민과의 연계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성급하게 쏟아지는 지원 대책들이 다문화에 대한 역풍을 가져올 수 도 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우리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자세를 확립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사업이 정부의 위탁사업, 대형복지단체. 기업의 사회적 공익활동 등에 의해 말그대로 '수익사업화'되며 많은 단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아이템이 되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는 수평적 분배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수자 운동을 하는 영세 단체들 내부에서도 '사회보조금'에 대한 독식 현상이 일어나면서 다문화 지원사업이 이주민을 위한 지원이라기보다는 지원 단체의 수익 프로그램화하는 경향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자치단체, NGO, 주민과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견인을 위한 감시(다문화정책 Watch)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방자치단체는 NGO와의 파트너십에 기반 하여 연계협력을 강화 하여야 할 것이며

3) 멘토링은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의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멘토를 연결하여 개별화된 학습 및 인성지도를 통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이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NGO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받아 형식적으로 지원정책을 실행하는 단순한 대행자의 역할에서 벗어나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지원정책이 흔히 빠질 수 있는 형식성, 추상성의 약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바꾸는데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 내에서 새로운 결혼형태의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있는 국제결혼의 증가로 농촌지역에 급격히 늘어나는 다문화가정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정착을 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앞에서 충분히 언급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다문화사회로의 진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 지원법 과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부장적 혈통주의와 동화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어촌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불법적인 체류계약서의 문제, 체류자격을 얻기까지의 불안정한 일상 및 그를 빌미로 야기되는 가정폭력의 문제, 편견과 속박, 기타 인종차별과 인격적 무시[4]등 많은 어려움 속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어쩔 수 없이 이주해온 이방인이 아니므로 일방적인 동화가 아닌 쌍방향 문화소통을 통해 진정한 지역사회의 주민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사회에 뿌리 깊은 단일민족의 신화와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의 전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동남아지역의 결혼이주자에 대하여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의 여성이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돈에 이끌려 팔려왔다는 매매혼적 부정적 인식이 그들을 진정한 가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도 그런 아픈 역사가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음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중과 관계공무원, 관계자등과 사회전반의 수용적 태도 및 문화적 역량 증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그의 가족구성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문화와 인권의 양면성을 함께 충족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는 임파워먼트 등 다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권옹호이면서 실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편 다문화가정 내 구성원들의 이해와 협조를 위한 가족교육, 가족상담의 의무화, 활성화를 위한 가족중심의 지원실천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 간 이해를 위해 우리문화의 일방적인 동화만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의 문화

4) 국제결혼 홍보 현수막에 “숫처녀 100%보장”,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등의 문구가 이 사례로서 출신국들의 항의도 받고 있고 제재도 받고 있다고 한다.

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쌍방향 문화체험기회를 배우자 및 가족에게 제공해주어 각 문화의 장점을 살려 공존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제공되고 있는 각종 교육들은 우리 것의 전달, 이해위주로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화 시키려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상대방의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것만을 전달하기 때문에 다문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출신국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 할 수도 없는 상황이며, 단지 생존과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교육내용을 수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의 문화를 전달하더라도 상대방 문화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전달해야만 최소한의 이해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우리문화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 자국의 문화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즉, 일관된 기존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탈피하여 지역특성에 맞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욕구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제공도 중요한 문제이다.

아직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단순히 한국사회의 적응과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므로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기여방안과 잠재된 능력의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곁에 와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배우자인 한국남성들에 비해 고학력의 엘리트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들을 한국에 갓 들어온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모국어 상담원, 원어민 강사. 지역 내 통・번역 자원으로 활용하는 공공부문 취업알선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때이며, 이들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소중한 인적자원으로 끌어올리는 등 일관된 정책추진과 지역사회의 특성에 맞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고 역량강화를 통한 문화적 다양성과 평등성에 접근하여 다양성에서의 통합(unity-in diversity)을 이룰 때 다문화 가정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휘원. (2006). 한국 다문화사회의 형성요인과 통합정책. 「국가정책연구」, 20(20): 5-34.

경남발전연구원. (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고모다 유미. (2007). 현대의 민족문제와 다문화주의: 일본: 일본의 다문화 공생은 가능한가?. 「민족연구」, 30: 51-65.

구차순.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에 관한 근거 이론」.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권미경. (2007). 「다문화사회의 교육문화 과제 탐색: 여성결혼이민자의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김경아. (2008).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의 성격」. 한국행정학회
김범수 외. (2007).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현황」. 서울: 삼성문화재단.
김범수. (2007). 현대의 다문화 가족;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야마야키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31: 86-113.
김소연. (2007).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 대책의 언어 사업 집행 분석」.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김영란. (2006). 한국사회에서 이주여성의 삶과 사회문화적 적응관련정책. 「아시아 여성연구」, 45(1).
김영주. (2007).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사회적 과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김오남. (2007).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2(3): 47-73.
김용찬. (2007). 「서유럽 국가 이주민 통합 대책의 수렴 경향과 원인에 대한 연구」. 충남여성 정책개발원
김현미. (2001). 글로벌 사회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인가? 전지구적 자본주의의 확산과 '성별화된 계급'의 출현. 「진보평론」, 7
김현숙. (2008).「국제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 대학원 .
농림부. (2008).「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
박재규. (2005).「국제결혼이주여성의 농촌지역정착과 지원방안」. 한국사회학회 하계학술 발표문.
박지영. (2008).「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지원체계」. 다문화 사회복지실천 매뉴얼.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보건복지부.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설동훈. (2005).「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한국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 이주여성인권센터 정책세미나.
설동훈・김현미・한건수. (2005).「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건복지부.
윤영미. (2008).「한국적 다문화중의의 특성과 발전방안에 대한 고찰: 이민 통합정책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연구. 평택대다문화가족센터.
윤인진 (2007).「국가주도 다문화주의와 시민주도 다문화주도」.
_____. (2008).「효과적인 다문화가정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서울: 삼성출판사.
_____. (2008).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전개와 특성: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42(2): 72-103.
이용승. (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동아시아연구」, 8: 177-205.
임경택・설동훈(2006). 일본의 결혼이민자 복지 정책.「지역사회학」, 7(2): 5-68.
장미혜. (2008).「다문화사회의 미래와 정책적 대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정상우. (2008).「호주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법」. 한국법제연구원
정진경. (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문화적응과 정체성.「한국심리학」, 12(4): 395-432.
정진경・양계민. (2005). 문화 간 훈련의 이론과 방법.「한국심리학회지」, 24(1): 183-215
조한숙. (2009).「농촌노인과 외국인며느리의 고부관계만족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최현미. (2008).「결혼이민자들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바람직한 다문화가정 정책 모색을 위한 워크숍.
충청남도. (2009).「여성결혼이민자가족 사회통합 지원계획」.
_____. (2009).「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태안군. (2009).「2008 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청. (2009).「2008 인구동태」.
_____. (2008).「2007혼인이혼통계」.
한건수. (2006).「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_____ . (2006).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여성의 가족생활과 갈등 및 적응. 「한국문화인류학」, 39(1): 195-24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다문화사회를 향한 전망과 정책적 대응」.
한국염. (2004a). 이주의 여성화 한 유형, 국제결혼에 대한 여성 사회학적 분석.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 3주년 심포지엄 자료집」.
_____ . (2004b). 지구화와 이주의 여성화, 이주여성의 실태와 과제,「정책세미나 자료」.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호남대학교 다문화교육센터. (2008).「창조적 다문화시민사회 조성방안 연구」.
Appiah, K. Anthony. (1998). The Limits of Pluralism. In A. Melxwr et. al.(eds). *Multicuralism and American Democracy*. Lawrence : University Press of Kansas.
Eller, Jack David. (1997). Anti-Anti-Multiculturalism. *American Anthropologist.* 99(2): 249-256.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 다문화가족사업설명회」.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www.mohw.go.kr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www.mopas.go.kr.
여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접수일(2010년 08월 10일)
수정일자(2010년 09월 02일)
게재확정일(2010년 09월 16일)